##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99조 관련)

## 1. 일반기준

- 가. 제2호에 따른 지연기간에는 다음의 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.
  - 1)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
  - 2) 소송 등의 사유로 의무의 불이행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나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 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  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·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40조제2항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  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  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·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 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
112 31	上/1 日工七	금액
가. 법 제78조제5항 및 제86조제1항을 위반하	법 제140조제2항제2호	
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 통지를 태만히		
한 경우		
1)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1개월 이		50
상 2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		
2)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2개월 이		100
상 3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		

3)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3개월 이		150
상 4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		
4)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4개월 이		200
상 지연하거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	11 14 to = 10 1 10 1	
나. 법 제107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2항을 위	법 제140조제2항제3호	
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한		
경우		
1)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일을 경과한 날		100
부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		
2)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일을 경과한 날		200
부터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		
3)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일을 경과한 날		300
부터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		
4)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일을 경과한 날		400
부터 4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보고 또는 자		
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		
다. 법 제1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의	법 제140조제2항제4호	
인계를 태만히 한 경우		
1) 시·도조례로 정하는 인계기간을 경과한		100
날부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지연한 경		
<u>+</u>		
2) 시·도조례로 정하는 인계기간을 경과한		200
날부터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지연한 경		
수		
3) 시 · 도조례로 정하는 인계기간을 경과한		300
날부터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지연한 경		
수		
4) 시·도조례로 정하는 인계기간을 경과한		400
날부터 4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인계하지 않은		
경우		